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장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00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7.

발 의 자:이장섭·임호선·황운하

신정훈 · 김정호 · 양정숙

송갑석 · 김영호 · 윤재갑

이학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 기간, 입점상인이 임시 영업을 하는 경우,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지역주민과 인근 지역 농어민 등이 농·수·축산물, 생활용품 및 중고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.

그러나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임 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임시시장의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 관리의 적절성을 제고하는 한편, 현행 법령상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법체계를 정 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임시시장의 폐쇄근거를 규정함(안 제14조의2 신설).
- 나. 기존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업무인 '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'을 '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'으로 변경함(안 제32조제3항).
- 다. 상인회 설립 규정상 법인인 상인회의 의미 및 상인회 등록취소의 요건의 동의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65조제2항 및 제8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임시시장의 폐쇄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다. 다만 해당 임시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쇄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
  - 2.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 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
  - 3.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

제32조제3항제2호 중 "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"을 "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"으로 한다.

제65조제2항 중 "법인인"을 "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,"로하고, 같은 조 제8항제4호 중 "건축물·토지소유자"를 "건축물 및 토지소유자"로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4조의2(임시시장의 폐쇄) 시장
	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
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	에는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
	수 있다. 다만 해당 임시시장이
	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
	쇄하여야 한다.
	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	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
	<u>경우</u>
	2.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
	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
	<u>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</u>
	가 없게 된 경우
	3.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
	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
	여 휴업하는 경우
제32조(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)	제32조(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	3
업무를 수행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	2

### 제102조에 <u>따른 정비사업전</u> 문관리업의 등록

- 3. ~ 5. (생략)
- ④ (생략)

제65조(상인회) ① (생략)

- ② <u>법인인</u>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~ ⑦ (생 략)
- 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 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.
- 1. ~ 3. (생략)
- 4.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,
  건축물·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- ⑨ ~ ⑫ (생 략)

<u>따라 등록된 정비</u>
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
<u>변경</u>
3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제65조(상인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
<u>려는 경우,</u>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8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건축물 및 토지소유자

⑨ ~ ⑫ (현행과 같음)